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LPG충전소 소장이 업무종료 후 회사내 숙소에서 취침하다가 급성심정사로 사망한 경우

**A** 재해자는 LPG충전소 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2층 숙소에서 오전 08:15경 '중간선생사인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직접사인 급성심정사'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에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소장으로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화장실 청소, 충전보조, 가스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나 이는 특이한 형태의 근로조건으로 한시 긴장을 필요로 하

는 업무여건이라고 볼 수 없고, 평소 수행하는 업무들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휴식시간에 기존질환인 심장비대·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에 의해 사망한 점으로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데다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피재자는 근무시간 중 외출 등의 자유행동이 가능하고 한시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일 15시간정도 업무에 종사하고 안전관리업무의 특성상 집으

로 가지고 못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등 24시간 회사에 상주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업무종료가 바뀐 이후 종전과 달리 사업주의 적극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각종 대장의 작성과 기간지 작성 등의 업무가 추가 되었고 생소한 경리업무를 배우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사업주 변경 후 종전 임금이 약 23% 감소된 점, 충전소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가스판매량은 증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는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재자의 급성심정사는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장혈관질환에 자극을 가해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8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마이 아파트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ㅁ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ㅁ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 받은 아파트는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ㅁ의 남편 乙명의 소유권이登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ㅁ의 소유권이登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ㅁ의 소유권이登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ㅁ의 소유권이登記되어 있습니다.

**A**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서 급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지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

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처가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급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ㅁ의 남편 乙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대여금 2,0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씨의 노화- 퇴행성척추 질환①

한때 "마음은 박남 인데 몸은 김구"라는 우스개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한마디로 먹는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내 몸도 고물이 다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팔다리나 뼈 마디마디가 수질 때릴 것이다. 노화라고 하면 보통 30~40대부터 시작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노화는 거의 20대 초반에 시작되는데,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뼈의 노

화도 시작이 끝나는 20~25세를 고비로 시작된다. 이때가 되면 뼈의 무게가 남자는 해마다 0.3%씩, 여자는 3%씩 감소하여 노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노화하는 속도는 개인별로 섭취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뼈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은 수직 압박, 비틀림 압박 등의 외부 자극 등으로 인한 디스크나 관절염의 충격, 다리를 꼬고 앉는등지 비스듬히 있는 다든지 하는 좋지 못한 자세들로 인한 척추의 비틀림, 잘못된 식습관 등을

들 수 있다. 뼈의 수명은 2년으로 재생과 소멸을 반복한다. 새로운 뼈로 재생되는 속도가 소실되는 속도보다 빠르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요소가 많으면 나이가 들어도 깨끗하게 살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뼈가 노화되어 만성 요통·디스크·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퇴행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남녀 모두 40대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다. 즉 갱년기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면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고, 진액이 부족해지면 근육을 통하여 뼈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근육과 뼈의 정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화되어 가는 것이다. **☞의정부수한방병원(031-820-7200) www.ujh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불임에 대하여

불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남편의 정자 수 운동성이 정상이어야 하고 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자궁경부 점액을 통해 자궁 및 나팔관을 통과하여 난자와 만나야 하며 아내의 난자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여 배란된 뒤 나팔관으로 흡인되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인 경우 1년 이내에 70%~80% 정도가 임신을 합니다. 또한 2년 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과거에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를 원발성 불임증, 자궁 외 임신과 같은 임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 불임증이라 분류합니다. 불임의 원인을 규명 할 경우 임신 성공률은 64%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임증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문제이며 부부가 협력하여야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먼저 불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임은 남녀 모두에게 또는 남자나 여자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분류되며, 남자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을 때는 남성불임이라 하며, 남성 불임 증은 전체 불임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남성 불임의 검사는

여성에 비해 간단하고 단기간 내에 이상유무를 판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먼저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을 때를 여성 불임증이라 하며 여성 불임증은 남성에 비해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도 복잡합니다. 남성의 역할은 정자를 생산하여 질내에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정자를 받아들이고, 난자와 수정시켜서 키워야 하는 등 임신에 관여하는 요소가 많고 이에 관여하는 역할이 큼니다. 통계적으로 남성 불임 또는 여성 불임증이 합하여 70% 남성,여성 불임이 복합하여 20% 가량이고 그 밖에 원인불명 요인이 10-15% 정도 됩니다. 불임은 이제 더 이상 불임여성의 개인 문제나 불임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될 수 없고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임 부부 치료지원의 일환으로 인구조절위원회에서는 불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사이트(www.agimo.org)를 방문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소아과 과장 **이종승**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뇌막에 발생하는 염증 과정으로 여러 바이러스들에 의하여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간혹 심한 신경계 후유증 및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세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그 병원에 대한 면역성이 결핍된 경우에 감염될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영아들에게 접종하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H. influenzae라는 세균에 의한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이므로 바이러스 뇌수막염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원인 -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많은 경우에서 규명되지 못하지만, 규명된 경우에는 장 바이러스가 전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장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고 최근 국내에서는 남부 지방에서부터 유행하여 북부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4~6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 - 임상 증상의 심한 정도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같은 원인에 의한 경우라도 다양한 임상 경과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급성으로 시작되나, 간혹 며칠에 걸쳐 비특이적인 급성 열성 질환의 증상이 선행되기도

합니다. 초기 증상은 연장에서는 두통, 지각 과민, 영 유아에서는 심하게 보채는 경우가 있고, 두통의 경우에는 대개 잠무늬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 어린이는 복이 아프다 호소하며 호흡기 증상과 발열, 구역, 구토, 목 다리의 통증, 광선 공포증이 흔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며 의식 장애 및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단 -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해서 뇌척수액 소견을 확인하고 배양 검사를 시행합니다. 장 바이러스가 원인일 때에 초기에 배양 검사를 시행하면 약 70%미만에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됩니다. 치료 -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증상 때마다 대증 요법이 필요하고, 두통과 지각 과민에는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경련, 뇌압 상승, 심한 고열, 의식 저하, 불충분한 호흡, 흡인 및 질식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본인은 2004년 상반기에 A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와 철골공사를 본인 소유가 아닌 B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현장의 재무구입 및 경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B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취하고 공사실적에 대하여는 건설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각종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세무서로부터 본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귀하와 같은 경우 건설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국제기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 사업자의 판단은 당시의 정황 등을 보아 결정하게 되는데, 행위당시의 증빙서류와 주변 관계인의 진술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빙서류의 예를 들면 귀하가 건설회사의 임·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급근제 연말정산 서류 및 급여지급 명세서와 송금 받은 은행통장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주식회사와 공사계약시 참석자가 누구이며, 공사현장 상주자가 누구인지 등 공사현장의 상황진술이 사실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무서에서 귀하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보면, B종합건설주식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사업자로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자료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의 고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위에서 설명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시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자는 명의대여나 자료상행위 등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행가는 처벌을 받으며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실납세를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 믿을 수 있는 식품

**엄마의 손맛, 맛과 영양에 한민족 정서까지!!!**

**승화식품** 에서  
Seung Wha Food.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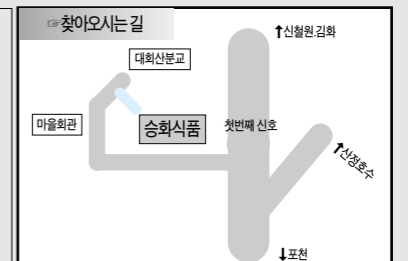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택곤**



- ◆2002.11.11 농업인의날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 ◆2002.11.24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 수상
- ◆2003.5.14~18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 ◆2003.6.12~15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 ◆2003.10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 ◆2004.5 하이 서울 참가

◆연혁  
1984.3.10 승화식품 설립  
1986.6.30 5개 품목 생산  
1993.11.12 9개 품목 추가생산  
1996.3.30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1996.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1996.6.18 경기도 포천 공장 완공  
2000.4.7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22 TEL : 02-960-6041 FAX : 02-960-1282  
포천공장 :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309 TEL : 031-535-6626~7 FAX : 031-535-6626